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2078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김진희, 정종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4. 4.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1. 9. 1. 접수 제637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0. 8. C와 20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대출금리 연 7.9%, 상환은 1회차 3,545,560원, 2회차 21,845,110원, 3회차부터 72회차까지는 매월 3,245,110원씩 72개월간 분할상환하고, 연체시 연체이자율은 10.9%(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하는 건설장비상용차 할부론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 204,2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C에게 지급하였고, 2020. 10. 15. 할부론 약정 대상인 별지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액 204,200,000원, 채무자 C, 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3. 23.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 소유였는데, C는 2021. 9. 1. 같은 날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처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7,2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 주식회사로 된 2015. 4. 29.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동에 있는 E호(전유부분 52.86㎡, 대지권비율 490분의 35.58)가 2021. 12. 9. 매매대금 270,000,000원에 매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 9, 10, 12, 15-17,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해할 사해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당해 채권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 그리고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이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의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6567 판결 등 참조).
-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4, 7, 22-2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2023. 1. 4. 기준 C의 연간근로소득은 30,000,000원 정도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한 것으로 2023. 1. 4. 기준 C의 채무로는

F에 대한 대출금채무 13,482,000원이 있었고, D에 대한 대출금채무 45,742,000원이 있었으나 위 D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㉞ 이 사건 건설기계의 2023. 5. 9. 기준 감정가격은 160,000,000원이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감정가액이 산정된 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약 1년 8개월) 이전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도 이 사건 건설기계의 시가가 위 감정가액과 같았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으며, 위 감정서에 의하면 동종 유사기계의 2020년식의 경우 2022. 6. 14. 기준 평가가격이 180,000,000원이고 2022년식의 경우 2022. 11. 17. 기준 평가가격이 210,000,000원인데, 이 사건 건설기계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㉟ C는 이 사건 대출 이후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하였고 그 후에도 2022. 11.경까지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하였던 점, ㊱ 원고는 2022. 12. 20.경에야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의 통보를 하면서 변제를 독촉한 후 2022. 12. 28.경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23. 1. 2. 발령된 점, ㊲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일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합계가 위 감정가액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사해성이 있다거나, C가 원고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해의사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

별지